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9. 4.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8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7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 9.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조 한영

가. 제안이유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지원하여 서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원료되어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및 당해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의2)
- 2000. 3. 1부터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도록 함. (안 제22조의2)

다. 재정근거

- 지방세법 (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7조 내지 제9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 제2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 행정규제기본법 (1998. 2. 28. 법률 제5529호) 제3조제2항제3호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1호) 제3조제3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999. 11. 15. 조례 제3691호) 제3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2. 28 및 2000. 6. 7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안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구역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고, 제2항에서는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환부하고, 제3항에서는 경감세액이 납세의무자 별로 각각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2조의2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지원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지역을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6조의2 감면규정은 2000년 ASEM회의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마포구의 시범정비구역은 홍대정문 앞 일대와 양화로 지역으로 지역으로 사료되며 동 감면규정은 20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있나?
- 답변요지(조한영 세무2과장) : 현재는 없으나 앞으로 우리 구에 지점이 설치될 때를 대비해서 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설치할 때 재산세 및 사업소세 50퍼센트 경감은 특별한 혜택이 아닌가?
- 답변요지(조한영 세무2과장) : 특별정비구역은 양화로와 홍대정문 앞 일대로 감면액은 시에서 전액 보전해 주며, 응자까지도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광고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는 혜택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00. 8 .2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완료되어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및 당해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 연도 사업소세를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의2)
- 나. 2000.3.1부터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함.(안제22조의2)

3. 제정근거

- (1) 지방세법 (2000.2.3법률 제6260호) 제7조 내지 제9조
- (2) 지방세법시행규칙 (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 제2조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1999.12.31법률 제6073호)
- (4) 행정규제기본법(1998.2.28 법률 제5529호) 제3조제2항제3호

(5)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1998.2.24 대통령령 제15681호)제3조
제3호

(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1999.11.15 조례 제3691호)
제32조제1항

4. 조례 (안) : 따로붙임 참조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00.7.31 ~ 8.20)결과 특기할사항없음.

나.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

(서울시 세정13400-232호 2000.2.28 및 서울시 세정 13400-625호
2000.6.7)공문 통보

나, 2000.8.2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2(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

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퍼센트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절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
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
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
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